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-0106호

2022년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신규과제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「2022년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」의 신규 과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2년 1월 28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
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원장 김봉수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○ 대학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토대로 **연구개발 가치 제고**를 통한 **신산업·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·학 협력 생태계**를 구축

○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(기술이전 및 실험실 창업) 촉진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

□ 사업 내용

○ **대학기**술이전전담조직(TLO)과 기술지주회사를 통합 지원하여, **대학 보유 공공 기술 이전·사업화 촉진** 및 **실험실 창업 등 기업 성장 도모**

구분	기술이전(대학 TLO 지원)	창업/기업성장(기술지주회사 지원)
기술발굴	· 기술이전 유망 기술 발굴 · 기업 수요자 기반 공공기술 매칭	· 실험실 창업 후보 기술 발굴
BM 제작	· 비즈니스모델(BM) 설계	· 창업 비즈니스모델(BM) 개발
사업화	· 시제품 제작/시험·인증/디자인 지원	· R&BD(제품화, 양산화) 지원
마케팅	· 국내·외 기술마케팅	· 공개투자 유치, 제품 판로개척 등 기업 창업(실험실, 자회사) 설립·성장 지원

2. 관련 규정

□「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3」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제15조,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」 등

3. 지원 내용

□ 지원 기간 및 규모

○ 사업 수행 기간

① 리더형

- 당해 지원 기간 : ‘22. 4. 1 ~ 12. 31 (9개월)

* 상기과제 총 사업기간 : ‘22. 4. 1 ~ ’24. 12. 31(1+1+1년)

② 도약·성숙형

- 당해 지원 기간 : ‘22. 4. 1 ~ 12. 31 (9개월)

* 상기과제 총 사업기간 : ‘22. 4. 1 ~ ’24. 12. 31(2+1년)

○ 2022년도 예산

- 신규과제(15개 선정) : 56.38억원

구분	도약형	성숙형	리더형
과제수	6개 과제 내외	7개 과제 내외	2개 과제 내외
지원 규모(안)	12억원 내외	28억원 내외	16억원 내외

* 유형별 과제 지원 현황, 선정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지원 과제 수 및 예산 등을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

* 단계평가 등을 통해 결과가 미흡한 경우 과제 중단, 연구개발비 감액 가능

< 주관기관(참여기관 포함) 사업비 편성 및 사용관련 주요기준 >

- ㅇ 인건비는 유형(도약, 성숙, 리더)별로 정부출연금 중 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
- ㅇ 사업비는 인건비, 직접사업비로 편성, 연구수당/간접비는 편성 불가
  - *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적용
- ㅇ 인건비는 기술사업화 전문인력(행정・지원・파견 인력 등 제외) 중 정규직(정관 또는 사규에 의한 정규직원, 무기계약직 등으로 업무분장표 명기) 또는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예정인 자에게만 지원
  - *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: 변리사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기술거래사 등 국가에서 발급한 기술사업화 관련 자격증(등록증)을 보유한 자 또는 기술사업화 유관기관(기술지주회사, 산학협력단, 기술거래기관 등)에서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해당자
- ㅇ 주관기관은 각 과제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의 35% 이상을 사용하며, 이와 함께 각 과제별 활동과 성과창출에 대한 책임 부담
- ㅇ 리더형은 매년 단계평가를 실시하며, 지원 요건 충족시 총 3년간 지원
- ㅇ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기술사업화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시, 시제품은 기술지주회사가 소유 및 관리
- ㅇ 사용내역 중 관세,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되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

□ 유형별 지원 내용

① (리더형) 연구성과 사업화 리더형 선도대학

ㅇ **추진 내용**

- **기술사업화(창업 포함) 조직 구조 혁신**(유관 조직간 유기적 연계·융합) **및 제도 정비**를 통한 **연구성과의 사업화 가속화** 추진
  - * **교원업적평가** 개선(기술이전·사업화 성과비율↑ 등), **산학협력단(TLO)** 조직 전문성 강화 등 **대학 자구노력 수준**을 평가하여,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비 조정 등에 반영
- 성숙된 **기술사업화 전담조직(TLO, 기술지주회사 등)을 중심**으로 대학간(또는 대학 內) **강점 분야에 대해 시장 친화적 대형성과 창출**
  - **他 대학간 특화 분야를 중심**으로 **상호 보유 자원** 및 **사업화 역량**을 결집하는 **'기술·제품별 공동 R&BD' 추진시 선정 평가에서 우대**
- 대학 內 창업문화 확산 및 대학 보유 공공기술 기반 **실험실 창업(교원, 학생) 활성화**

<주요 수행 내용(안)>

구분	주요 내용
기술사업화 및 창업 조직·제도 개선	• 대학 내 기술사업화 물적·인적 자원의 **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직 체계 정비** • 성과 주도形 대학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**내규 등 제도** 정비 ※ 대학 기술사업화 역량 자체분석보고서 제출 必 • **TLO 전문 인력 확충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**
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중심의 R&BD 추진	• 국내외 특허 동향 및 시장 분석, 기술 분야별 제품 동향, 산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**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술·제품군 선별** • 기술·제품군에 대해 강점 분야별로 **대학 간(또는 대학 內) 연계·융합**하여 **기술사업화 로드맵* 제시** * 대학간 연계시 상호 기술자산 실사, 기술-제품 포트폴리오 구축, R&BD,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**사업화 가능성 사전 검증** • **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주도하에 기술과 시장을 연결**하는 **"시장친화형"** 기술사업화 추진
실험실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	• 유망 기술 발굴부터 우수기술 발굴, BM 수립/IP 재구성/시제품 제작비 등 지원, 대학(원) 재학생 대상 창업 실무능력 배양, 예비 창업자 양성 프로그램, 투자유치 등 **실험실(학생, 교원) 창업 활성화** 추진 등 • 성장잠재력 높은 대학혁신기업* 집중 육성 * 대학에서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교원창업 등을 포함 • 후속 투자유치, R&BD 연계 등 기업성장 지원 후 지분매각, 배당수익 등을 통한 **투자금 회수 및 수익 실현**

○ 지원 조건

- 다음 지원조건에 맞춰 신청기관의 단독 참여로 구성

구 분		리더형
지원 기준	수익원천 (기술료수입+지분매각)	20억원 이상
정부출연금 중 인건비 비중		15% 이내
특화프로그램 비중		50% 이상
매칭펀드 비율		30% 이상

1) <u>대학알리미 2020~2021년 공시 자료(2019~2020년도 실적 기준) 실적의 평균값 기준으로</u> 역량별 구분 실시(공시실적 오류 등 발생시 공인된 자체 증빙 요망)

* (중복지원 불가) TLO 및 기술지주회사는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 형태로 1기관 1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

2) 유형별 매칭펀드 비율은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산정하며, 매칭펀드의 현금비율은 30% 이상으로 함

3) 유형별 특화프로그램은 양식을 참조하여 프로그램 및 소요예산(안) 제시

② 도약·성숙형

○ 추진 내용

- 단계별 제시된 목표에 따라 대학 특성에 맞게 기술이전·사업화 및 창업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·운영
- 대학(또는 대학간)은 전략 분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포트폴리오 구축,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**특화프로그램 추진**

< 단계별 목표 >

▷ **(성숙형) 기술사업화 자립화**

- 기술이전 사후관리 체계 마련, 기술사업화 전문성 및 출구전략 강화(특화기술 집중 사업화, 엑셀러레이터 기능 강화, 지분매각/인수합병/주식상장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 등)
- 기술사업화를 위한 인사, 운영지원, 조직, 외부 협력, 재원 마련 등 지원 강화 및 온·오프라인을 통한 성과 활용.확산

▷ **(도약형) 기술사업화 질적 성숙**

- 기술수요 발굴 및 창업지원 과정 개선점 도출, 기술사업화 교육 등 기술사업화 전문성 강화
- 대학/컨소시엄 간 협력,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(사업 노하우 학내 이식)
- 기업수요 고부가 유망기술 후보군 발굴 및 BM 타당성 검증 강화
- 성장잠재력 높은 자회사(고부가·고수익 기술 보유 등) 집중 육성

○ 지원 조건

- 지원조건에 맞춰 신청기관의 자율 선택 가능하여 단독 참여 또는 자유로운 컨소시엄 구성

구 분		유형별 구분 기준	
		성숙형	도약형
지원 기준	수익원천 (기술료수입+지분매각)	15억원 이상	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
정부출연금 중 인건비 비중		15% 이내	20% 이내
특화프로그램 비중		40% 이상	30% 이상
매칭펀드 비율		30% 이상	

1) **대학알리미 2020~2021년 공시 자료(2019~2020년도 실적 기준) 실적의 평균값 기준으로** 역량별 구분 실시(공시실적 오류 등 발생시 공인된 자체 증빙 요망)

* (중복지원 불가)TLO 및 기술지주회사는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 형태로 1기관 1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

2) 역량 그룹별 매칭펀드 비율은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산정하며, 매칭펀드의 현금비율은 10% 이상으로 함

3) 유형별 특화프로그램은 양식 참조하여 프로그램 및 소요예산(안) 제시

□ 신청자격

○ **(주관기관)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또는 『한국과학기술원』, 『광주과학기술원』, 『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』, 『울산과학기술원법』에 의해 설립된 기관**

- 분교의 경우,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*

*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산학협력단은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

- 주관기관은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설립인가, 법인등기부등록 등 설립 절차를 완료

※ 지원과제의 권역 구분은 주관기관의 소재지에 따라 설정함

※ 단,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이 제도 및 기능적으로 분리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는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(단,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도 등 기관내부의 증빙자료 필요)

○ **(참여기관)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, 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, 『한국과학기술원』, 『광주과학기술원』, 『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』, 『울산과학기술원법』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**(신기술창업전문회사)

- 참여기관은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설립인가, 법인등기부등록 등 설립 절차를 완료
- 주관기관과 참여확약서를 체결하며, 참여확약서에는 참여기관의 운영계획, 정보 공유 계획, 대응자금 등 포함

□ 지원제외 대상

○ 2021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-0362호) 계속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

○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일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

○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
4. 추진 체계

□ **(주관부처)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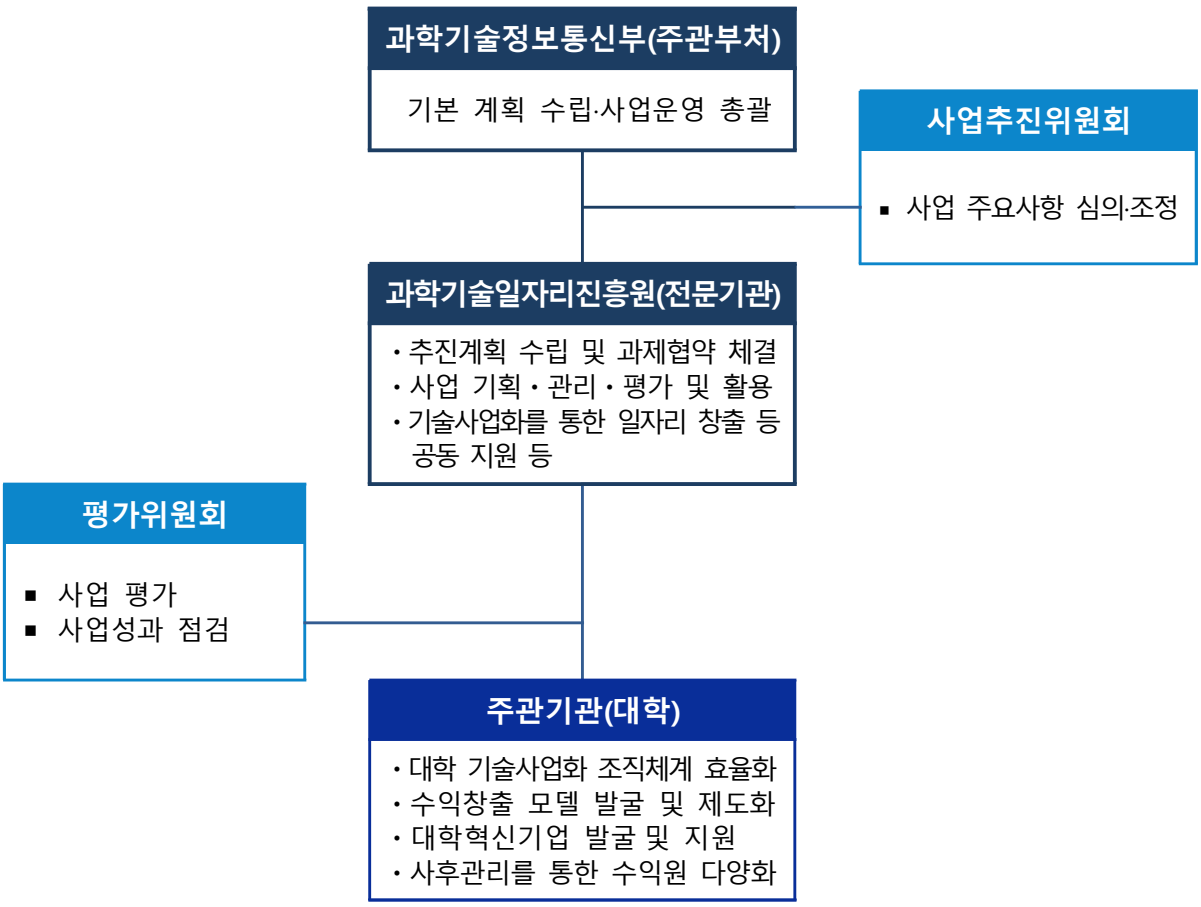
○ 사업 총괄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

□ **(전문기관)**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

○ 사업 기획 및 평가, 대학기술경영센터 지원/관리 등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체계 구축

□ **(주관기관)** 주관대학 산학협력단

○ 대학기술경영계획 수립·점검,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체계 효율화, 수익창출 모델 발굴 및 제도화, 대학혁신기업 발굴 및 지원, 사후관리를 통한 수익원 다양화 등



5. 선정평가

① (리더형) 연구성과 사업화 리더형 선도대학

□ 선정평가 절차

○ **(선정 규모)** 1단계 평가(2배수 내외)를 통과한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(발표), 3단계 최종 선정 실시

○ **(선정 절차)** 서면평가(1차) → 발표평가(2차) → 사업추진위원회 심의·확정, 총 3단계 절차로 진행

구분	참여대학	평가위원회		사업추진위원회
단계	사업신청	1단계	2단계	3단계
내용	사업신청서 등 접수 ⇨	서면평가 ⇨	발표평가 ⇨	최종 선정

□ 평가 방안

○ **(선정·평가위원회)** 학계, 산업계, 연구계 등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 관련 분야의 7인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 위원회 운영

○ **(평가 원칙)**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구조 혁신, 제도 정비, 강점 분야에 대한 R&BD 추진 계획 등 국내 최고의 기술사업화 선도 모델 제시 및 운영 가능 여부를 중점 평가

○ **(1단계 서면평가)** 신청자격, 공고와의 부합성, **정량지표 검증 평가**

-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과제수의 2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
- 정량실적은 기본적으로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고 대학정보공시를 하지 않은 항목은 대학에서 별도 증빙자료 제출

○ **(2단계 발표평가)** 서면평가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대학 사업계획서에 대한 **정성평가 중심의 발표평가** 실시

○ **(3단계 최종 선정)** 발표평가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, 대학 사업수행역량 등을 **종합적으로 심의** 후 **최종 선정**

□ 평가지표(안)

항목		평가지표	배점
정성평가 (70)	사업추진 역량	▪ 기술사업화(기술이전·실험실창업) 추진 역량 확보 관련 구체성 및 지속성 ▪ 기술사업화 인력 구성 및 전문 역량의 우수성 ▪ 기관장의 기술사업화 추진 의지	10
	기술사업화 조직·제도 개선	▪ 대학 내 물적·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직 체계 정비 계획 적절성 ※ 단계적 조직혁신 계획, 선도모델 공유·확산 계획, 기술경영 관련 관리 계획 등 ▪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내규, 관련 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정비 계획 **※ 대학 기술사업화 역량 자체분석보고서(자율 양식) 제출** ▪ 대학(원) 재학생 창업 실무능력 배양 운영 현황 및 계획 ※ (예시) 대학(원)생 졸업 요건에 창업교과목 이수 여부 포함	15
	대학기술 경영활동	[기술사업화(기술이전·실험실창업) 전략 기획] ▪ 기술이전·실험실창업 목표와 전략의 적합성 ▪ 전략 기술별 기술사업화 전략(이전·창업)의 명확성 ▪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	15
		[실험실창업기업 성장지원] ▪ 기술이전/창업기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▪ 기술이전/창업기업 네트워크(기술/기업교류회) 구축의 우수성 ▪ 대학혁신기업(대학지분보유 기업) 관리·성장 지원 활동의 우수성	
		[대내외 협력 촉진] ▪ 대내·외 기술사업화 조직과의 협력방안의 구체성 ▪ 외부자금 유치전략 및 활용전략의 실현가능성	
	프로그램 운영	▪ 유망 기술 및 기업수요 발굴부터 기술사업화(창업포함)까지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–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특화 프로그램 구체성·적절성·실현가능성 등 ▪ 他 대학 간(또는 대학 내) 강점 분야에 대해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중심의 기술·제품별 R&BD 계획 적절성 – 강점분야 기술·제품별 R&BD 계획의 구체성·적절성·실현가능성 등 ▪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– 기술사업화 활동 및 R&BD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적절성 등 ▪ 우수 성과모델을 他 대학으로 확산 계획 등	25
		▪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전략의 우수성 및 대표성 – 자회사, 교원창업, 과기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창업모델 발굴 실적·계획 – 사업 신청기관의 과거 대표적 성과(기술이전, 실험실창업, 자금유치 등) 및 사례 중심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계획	5
정량평가 (30)	인력 (공통사항)	▪ 기술사업화 인력 평균 근속년수(정규직, 무기계약직) ▪ 기술사업화 총인력수(정규직, 무기계약직) ▪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수(정규직, 무기계약직)	10
	기술이전	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 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의 기술이전 수입료	10
	기술창업	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 자회사 수 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 자회사 고용인력 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 자회사 매출액 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 실험실창업기업* 수 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 실험실창업기업* 고용인력 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 실험실창업기업* 매출액 * 자회사와 중복 제외	10
합 계			100

* 他 대학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'기술·제품별 공동 R&BD' 추진시 가점(5점 이내) 부여

※ 향후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지표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② 도약·성숙형

□ 선정평가 절차

○ **(선정 규모)** 1단계 평가(2배수 내외)를 통과한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(발표), 3단계 최종 선정 실시

- 소재지에 따라 **5개 권역***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대학을 선정

*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충청권(충남·충북·대전·세종), 호남제주권(전남·전북·제주·광주), 대경강원권(강원·경북·대구), 동남권(경남·부산·울산)

** 권역 내 신청대학이 없거나 모든 신청 대학이 과락(총 득점이 만점의 60% 미만)인 경우 해당 권역에서는 사업 수행 대학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*** 권역 구분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재된 주관기관의 소재지 기준으로 표기하며,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 지역 안배 우대

**** 균특회계임을 감안하여 권역별 안배 가능

○ **(선정 절차)** 서면평가(1차) → 발표평가(2차) → 사업추진위원회 심의·확정, 총 3단계 절차로 진행

구분	참여대학	평가위원회		사업추진위원회
단계	사업신청	1단계	2단계	3단계
내용	사업신청서 등 접수 ⇨	서면평가 ⇨	발표평가 ⇨	최종 선정

□ 평가 방안

○ **(선정·평가위원회)** 학계, 산업계, 연구계 등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 관련 분야의 7인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 위원회 운영

○ **(평가 원칙)** 유형별 목표달성을 위해 기술사업화 추진목표 및 전략, 운영 가능 여부를 중점 평가

○ **(1단계 서면평가)** 신청자격, 공고와의 부합성, **정량지표 검증 평가**

-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과제수의 2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
- 정량실적은 기본적으로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고 대학정보공시를 하지 않은 항목은 대학에서 별도 증빙자료 제출

○ **(2단계 발표평가)** 서면평가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대학 사업계획서에 대한 **정성평가 중심의 발표평가** 실시

○ **(3단계 최종 선정)** 발표평가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, 대학 사업수행역량 등을 **종합적으로 심의** 후 **최종 선정**

□ 평가지표(안)

항목		평가지표	배점
정성평가 (70)	사업추진 역량	▪ 대학기술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조직 목표의 구체성 ▪ 기술사업화 인력 구성 및 전문 역량의 우수성 ▪ (컨소시엄)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계획의 구체성	10
	사업화 기반구축 및 협력체계	▪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의 구성 및 협업계획의 구체성 ▪ 대학TLO 자립 운영 기반 구축 전략의 우수성 ▪ 사업비 활용 계획의 구체성 – 기술가치 제고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(유형별 출연금 30~40%이상) – 조직 역량 강화 및 자립을 위한 운영 계획 등 ▪ (컨소시엄) 컨소시엄 구성의 우수성 * 지역기반 성장전략, 공동 집중 육성 기술군, 협력 방안 등의 합목적성 평가	15
	대학기술 경영활동	[기술사업화(기술이전·실험실창업) 전략 기획] ▪ 기술이전·실험실창업 목표와 전략의 적합성 ▪ 전략 기술별 기술사업화 전략(이전・창업)의 명확성 ▪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[실험실창업기업 성장지원] ▪ 기술이전/창업기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▪ 기술이전/창업기업 네트워크(기술/기업교류회) 구축의 우수성 [대내외 협력 촉진] ▪ 대내・외 기술사업화 조직과의 협력방안의 구체성 ▪ 외부자금 유치전략 및 활용전략의 실현가능성	20
	프로그램 운영	▪ 대학 기술사업화 역량 활용 특화프로그램 운영 적절성 및 구체성 – 대학 기술사업화 역량 활용 기술사업화 자립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 제시 – 대학(원) 재학생 대상 창업 실무능력 배양 계획 제시	20
		▪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전략의 우수성 및 대표성 – 자회사, 교원창업, 과기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창업모델 발굴 실적・계획 – 사업 신청기관의 과거 대표적 성과(기술이전, 실험실창업, 자금유치 등) 및 사례 중심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계획	5
정량평가 (30)	인력 (공통사항)	▪ 기술사업화 인력 평균 근속년수(정규직, 무기계약직) ▪ 기술사업화 총인력수(정규직, 무기계약직) ▪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수(정규직, 무기계약직)	10
	기술이전	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 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의 기술이전 수입료	10
	기술창업	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 자회사 수 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 자회사 고용인력 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 자회사 매출액 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 실험실창업기업* 수 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 실험실창업기업* 고용인력 ▪ 최근 3년간 주관·참여기관 실험실창업기업* 매출액 * 자회사와 중복 제외	10
합 계			100

※ 향후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지표는 일부 변동 될 수 있음

6. 신청방법

□ 신청서류

구 분		내 용	비 고
0		○ 신청공문(주관기관장 명의)	기관 자율양식
1* 사업신청서	①	○ 사업신청서 양식	서식 제1호
	②	○ 신청자격의 적격성 확인서	서식 제2호
	③	○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(신용)정보조회동의서	서식 제3호
	④	○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서식 제4호
	⑤	○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-붙임1) 주관 및 참여기관 법인인감증명서 -붙임2) 참여기관의 참여내역 (운영계획, 정보공유 계획, 대응자금 부담계획 등 참여기관별 1장 정리)	서식 제5호 (붙임1,2)
	⑥	○ 주관·참여기관 실적 확약서	서식 제6호
	⑦	○ 주관·참여기관 인력 확약서	서식 제7호
	⑧	○ (리더형) 대학 기술사업화 역량 자체분석보고서	기관 자율양식
2**		○ 대학현황 및 추진실적 증빙 - 전담인력, 연구개발비, 특허, 지주회사 자본금, 기술이전 수입료, 기술이전 건수 등	기관 자율양식
3		○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	영리기관에 한함 (필요 시 제출)
4***		○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실적 현황표	별첨

*(구분1 관련) 사업신청서는 각10부(원본1부 포함, A4용지 크기 좌철 양면인쇄 제본)
**(구분2 관련) 현황 및 실적 증빙 제출은 원본대조필 삽입 요망
***(구분4 관련) 이메일 제출(필수)

□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

- ㅇ **공고기간 : 2022년 1월 28일(금) ~ 3월 3일(목) (33일간)**
- ㅇ **제출기한 : 2022년 2월 28일(월) ~ 3월 3일(목) 16:00까지**
- ㅇ 제출서류 : 공문 1부, 신청서 10부 및 증빙서류, 전자파일(hwp, pdf 각 1부)
- ㅇ 제출방법 : 이메일 및 오프라인 제출(이메일은 모든 서류 송부)
  - 서류제출 마감일 16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

☞ 이메일 : idea@compa.re.kr
☞ 주 소 : (03737)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7층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일자리정책팀
☞ 문 의 : 02-736-9822(문혜정 선임연구원)

7. 사업설명회

□ 사업설명 일정

○ 온라인 사업설명회 추진 예정('22년 2월) ※ 일정 등 추후 안내

8. 사업추진 일정(안)

절차	추진내용	일시	주체
사업공고	사업공고	'22.1월	과기정통부
▼			
신청서 접수 및 선정	사업계획서 접수	'22.3월	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
▼			
사업평가	지원과제 선정	'22.3월	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
▼			
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지원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'22.4월	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
▼			
사업수행	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	'22.4월~12월	주관기관
▼			
연차/단계 평가	1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 평가	'22.12월	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